

의안번호	2219676
의 퇴 인	김용태의원
회 답 일	2026. 7. 15.
추계번호	26C32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3조의3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중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포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의3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법률·심리 상담을 연계하고, 노무 지식과 위기 대응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 문제를 분석

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목적으로 6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¹⁾
 -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실시할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의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법 제3조의3제4항²⁾은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확대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1)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업을 편성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중략)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